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882
----------	-------

발의연월일 : 2023. 12. 8.

발 의 자 : 조승래 · 허숙정 · 한준호
서영석 · 설 훈 · 변재일
김영진 · 이용빈 · 도종환
박영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재임용 심의를 하는 경우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교원의 불복절차로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정량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사유에도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법에 이러한 규정이 부재하여 재임용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이전에 과학기술원에 대한 불복 심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원의 재임용에 대한 심의가 정량적·정성적인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은 교원이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 행정소송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재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임용 거부에 대한 불복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4 신설).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평가”를 “정량적·정성적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를 “제16조의4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과학기술원은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 ① 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과학기

술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교원의 임면) ① ~ ⑤ (생 략)	제16조(교원의 임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 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 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u>평가</u> 등 객 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 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 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 ----- ----- ----- -----정량적 · 정성 적 평가-----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 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 내에 「 <u>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 법</u> 」 제7조에 따른 <u>교원소청심 사위원회</u> 에 심사를 청구할 수	⑦ ----- ----- ----- -----제16조의 4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원소청 심사위원회에----- -----

있다.

<신 설>

⑧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과학기술원은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4(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 ① 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

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과학
기술원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
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과학기술원소청심
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
한다.